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선택 · 배열에서 유의할 사항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소재(素材)선택의 중요성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축적되기 이전 단계의 개개의 정보를 저작권법 규정에서는 소재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6조) 한편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소스정보’라고도 하고 ‘원시정보’라고도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12조 제1호의 정의규정에서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정보라 함은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정의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축적되는 ‘원시자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시자료’는 배열·구성 등 가공되지 아니한 본래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원시자료를 ①어떻게 수집하고 ② 배열하여 ③체계적인 구성으로서 ④창작성을 인정받아야만 데이터베이스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원시자료의 선택과 수집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겠다.

원시자료의 저작물성 검토

원시자료는 저작권법상 ①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있고 ②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 예컨대, ①의 경우는 논문, 소설, 수필 등을 의미 한다. ②의 경우는 법령·판례·고시 등 공공성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선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저작권법 제7조)

① 법령정보

국가에서 제정 공포하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관보에 대통령이 공포하였을때에 성립된다.(효력발생의 요건이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공포하게 된다. 부령은 각 부처 장관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한다. 모두 관보에 공포하도록 관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고시, 공고, 훈령 정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 공고, 훈령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관보를 보면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널리 국민일

법제코너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적실무(연재)

반에게 고시하는 경우가 있다. 철도청에서 철도 운임, 등 매일같이 고시가 쏟아진다. 또한 공고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입찰공고가 있다. 훈령의 경우는 법령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③ 법원의 판례 정보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국세청), 특허심판(특허청) 등도 모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러한 판례·심판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이용하기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매우 상업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이용이 가능하고 수집도 편리하다. 다만 최신 판례·심판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④ 사실전달의 시사보도

신문, 방송의 ‘사실보도’가 이에 해당된다. 순수한 사실보도에 해당된다. 신문보도자료라 하여도 ‘심층보도’(속칭 박스기사)로서 기자가 창작적인 노력을 들여 수집하고 논평하였을 경우는 보호대상이 된다. 교통사고, 화재사고, 범죄 등이 사실보도에 해당된다. 특히 신문사설, 논평, 연재소설 등은 사실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된다.

⑤ 공개한 법정·국회 도는 지방의회의 연술

국회의원이 공개된 의사당에서 대정부 질문 또는 정책의견을 발표하였을 때에는 연설(구술) 저작물의 요건에 해당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공개된 대법원에서 법관 또는 변호사의 판결·법률 연설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보호 받지 못한다.

위와같은 자료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국민 누구나 자유로 이용해야 하는 공익성 정보(법령·판례·훈령·공고·고시)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간의 창작적 노력을 들이지 아니한 사실보도(신문·방송 보도)이기 때문이다.

● 창작성이 결여된 원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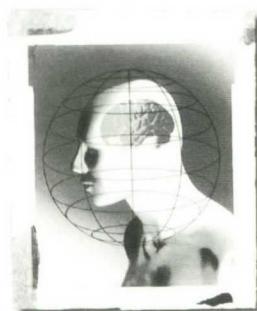
그밖에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원시자료를 들 수 있다. 즉 인간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기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요건’ 미비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원시자료가 있다.

① 논문의 서지적(書誌的)사항

타인의 학술논문을 그대로 전문수록할 경우 또는 부분적으로 수록하였다 하여도 정도가 지나칠 경우를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단순히 논문제목, 저자성명, 발표연월일, 출판사 등 서지적 사항을 기계적 작업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촉되지 않고,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다. 즉 서지사항만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을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기가 곤란하다. 물론 독특하게 창작성 있는 배열을 하였다면, 법적보호도 가능하다.

② 통계 데이터 등 수치정보(數值情報)

수치 데이터, 통계 데이터 등은 사상·감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 즉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주식 시세, 열차시간표, 경제통계, 재무제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치정보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치정보의 경우도 미적감각을 나타나게 또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표,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였을 경우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도형저작물로 볼 수도 있고 편집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치정보 데이터베이스 예컨대, 가격 유통정보, 증권정보, 기타 수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단순한 수치나열에 그치지 않고 색상을 넣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도표화 또는 그래프화 한다면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

● 그밖에 자유이용할 수 있는 자료

저작물중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 예컨대, 이광수씨의 흙, 사랑 또는 심훈씨의 상록수 등은 여러 출판사에서 단행본이나 전집물로 출판되고 있다.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만료

저작권법상에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후 50년이 경과되면, 지적재산권이 소멸된다.(저작권법 제36조)

② 공동저작권의 소멸시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③ 단체명의 저작권의 소멸시기

기관, 단체, 법인 등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④ 저작권자가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저작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없어 그 권리가 승계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즉 공유화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⑤ 법인, 단체 등이 승계없이 해산된 경우

법인, 단체, 기관 등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권리가 승계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물도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⑥ 장애인을 위한 점자 제작

정보화가 촉진될수록 정보소유의 격차는 심각해 진다. 특히 장애인 등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에서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 특히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음성식별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점자로 만들 수 있고, 녹음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0조)

⑦ 도서관에서 이용자 제공요 데이터베이스

최근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 되고 있다.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2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는 도서의 서지적 사항 즉 인덱스만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기 쉽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찾기는 쉽겠지만 정보의 이용에는 매우 불편하다. 또한 서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색인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이용자와의 정보인식의 격차가 생긴다.

둘째, 도서류를 그대로 전문입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정보이용이 편리하고 바람직하지만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